

# 안산시 노동복지회관 사용조례(안)

의 번 호	138
-------------	-----

제출년월일 ; '92. 10

제출자 ; 안산시장

## ○ 주 문

안산시 노동복지회관 사용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한다

## ○ 제안이유

- 안산시 노동복지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 운영관리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신속한 대민편의를 도모하며
  - 사용요율, 위탁의 조건등을 정하므로서 사후 마찰의 소지를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

## ○ 주요골자

- 가. 주요시설은 대회의실(예식장), 강의실, 구판장, 상담실, 독서실, 기타근로자의 복지및 권익보호에 관한 시설을 둠 (안 제 2조)

- 나.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안 제 3 조 )
- 다. 회관운영은 시 직영으로 하며 필요시 건물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음 ( 안 제 5조 )
- 라. 사용료는 별지와 같은며 예식장, 독서실, 체육실을 관내 근로자가 사용시 무료로함 (안 제9조, 10조)
- 마.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일정액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 안 제 11조 )
- 바.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등을 못하게 함 ( 안 제 15조 )
- 사. 이 조례에 규정치 않은 사항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의 규정을 준용

○ 참고사항

- 시설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대지 면적 ;  $1,990\text{m}^2$  ( 603 평 )
  - 건축 면적 ;  $2,051\text{m}^2$  ( 620 평 )

◦ 소요예산(건축비) ; 1,124,352 천원

- 시비 ; 846,686 천원

- 국비 ; 277,666 천원

※ 부지는 서부지역관리공단에서 무상 제공

##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 안산시 노동복지회관 ( 이하 '회관' 이라한다 )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 ) 회관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두고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한다

1. 대회의실 ( 예식장 ) 및 강의실
2. 구판장
3. 독서실 및 상담실
4. 기타 근로자의 복지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시설

제3조( 사용허가 )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 )가 회관내에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같다

② 회관 사용은 신청접수 순에 의하되 신청의 경합이 있을때에는 안산시의 직장근로자를 우선으로 허가 한다

제4조( 사용제한 )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지시를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전염성질환자 또는 만취자
  2. 위험한 물건을 가진자
  3. 타인에게 해를끼칠 우려가 있거나 회관내 질서를 문란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자
-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5조( 운영 ) ① 회관의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관련노동 단체에 위탁 운영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시설수탁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③ 위탁운영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회관의 운영과 건전노조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 수탁운영을 허가받은자 ( 이하 "수탁자" 라 한다 )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근로자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물을 회관에 신축,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준공과 동시에 안산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 제7조( 감독 )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이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기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기 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 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해제등 )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회관 설치목적 또는 제 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 위반 또는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사용료 ) ① 회관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②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및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선납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를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 지변등 불가항력으로 회관을 사용할 수 없을 때
  2. 시장이 환불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사용료 감면 )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회관을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1조( 관람료 ) ①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 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예매액을 포함한 총 수입액중 재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의 20/100을 사용료로 납입하여야 한다
  - ③ 관람료는 예매권, 관람권( 이하 "관람권" 이라한다 )을 발행하여 징수하되 매회별 좌석수의 120 %를 초과하여 발매하지 못하며 관람권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초대권, 회원권 또는 이와 유사한 무료 입장권은 총 발행매수의 20 %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2조( 사용중단신고 )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 제13조( 원상복구 )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등을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제 1항의 원상회복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규정에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제14조( 손해배상등 ) 사용자가 회관 사용기간중 장내의설비 기타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권리의 양도금지 )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인도,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준용 )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노동 복지 회관 시설 및 부대 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근로자	일반단체 및 개인	
대 회의실 (예식장)	1회 2시간 이내	20,000	40,000	1시간 초과시 5,000원 추가
대 기 실 (폐백실, 신랑, 신부대기실, 귀빈실)	•	3,000	5,000	1시간 초과시 2,000원 추가
강 의 실	•	10,000	20,000	•
음향기기(마이크, 녹음기, 음향기)	•	3,000	6,000	•
체 육 실	무 상 임 대			
구 판 장	공무원 연금 매점 판매 가격에 준한다			

※ 전기료 및 냉난방료는 실제 사용액을 납부 한다

※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활용시에는 관내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료를 면제하고 ( 재직 증명, 주민등록등본 징구 ) 독서실은 무료로 개방한다

( 별지 제 1 호 서식 )

노동 복지 회관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1. 사용 하고자 하는 시설 :

2. 사용 목적 :

3. 사용 기간 (시간) :

4. 사용자(단체) :

위와같이 노동 복지 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 하오니

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 9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전화 번호) :

성명 및 단체명(또는대표자) : (인)

안 산 시 장 귀 하

첨 부 ; 가. 행사개최 계획서 1부

나.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경우 관련 기관의 필증 1부

다. 관내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2호 서식)

노동 복지 회관 시설 수탁 신청서

1. 건물(시설)명칭 :

2. 소재지 :

3. 구조물 :

4. 총 건평 :

5. 용도 :

위와같이 노동 복지 회관 시설물을 수탁 신청 하오니 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소재지) :

단체명 :

대표자 :

안산시장귀하

첨부 : 가. 사업 계획서 1부

나. 수탁 관리에 따른 예산서 및 수지 계산서(추정)

##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138
----------	-----

제안년월일 : 1992. 11. 9

제안자 : 총무위원회 위원장

## 1. 수정이유

- 안산시노동복지회관 운영사업의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케 할 경우
- 시 직영의 회관운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수탁과정에서 과열 경쟁발생과 위탁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 2. 수정주요골자

- 조례안 제5조(운영) 제1항중 회관운영사업의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함
- 조례안 제9조(사용료) 제2항중 회관및 부대시설의 전부를 위탁운영한다는 내용을 삭제함

##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운영) 제1항중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의 일부"로 한다

제9조(사용료) 제2항중 "회관및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관및 부대시설의 일부"

로 한다.

## 조문대비亞

원안	수정안
제5조(운영) ① 회관의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노동단체에 위탁운영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운영) ① ..... ..... 그사업의 일부 .....
② ~ ④(생략)	② ~ ④(원안과 같음)
제9조(사용료) ①(생략)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 및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①(원안과 같음) ② ..... 회관 및 부대시설의 일부 .....